



# 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 결정 처리(No.3067114)

우리 구로 2015. 06.29.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코자 합니다.

- 1. 내 용 : \*\*\*\*\* 건축허가 설계도면 정보공개 요청
- 2. 공개결정 여부 : 비공개 결정
- 3. 근 거 :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9조 제1항 제6호
- 4. 사 유

- 우리 구 \*\*\*\*\*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요청된 사항은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해당사자가 비공개 요청하였고,  
 - 건축허가 설계도면이 공개될 경우 건물 내부의 평면 등이 노출되어 사생활의 침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,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제1항 6호에 의거한 비공개대상임을 알려드리므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결정통지서 1부. 끝.

|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장은교 | 지구단위건축팀<br>장 | 박기홍 | 건축과장 | 한병준 | 도시관리국장 | 07/06<br>이진형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
협조자 ★주무관 최성렬